

일시/장소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SK T-타워 4층 SUPEX홀

의안

1.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 연결기준 매출액 17.10조원, 영업이익 1.07조원
- 주당 배당금 1,660원 (분기 배당 포함)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25년 개정된 상법 내용 준수를 위하여 관련 정관 규정 일체를 정비
 -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명시 (제35조의3)
 - 분리선출 감사위원 2인 선임 의무화 (제47조의3)
 -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 (제31조 등 8개 조항) ※ '26.7.23. 시행
 -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관련 내용 반영 (제21조, 제27조, 제48조) ※ '27.1.1. 시행
 - 이사 선임 관련 의결 정족수 조항 삭제 (제32조)

3.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 감액배당 대상 자본준비금 1.7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SK텔레콤 제42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

의안 (계속)

4. 이사 선임의 건

- 사내이사 후보 (정재헌)
- 사내이사 후보 (한명진)
- 기타비상무이사 후보 (윤풍영)
- 사외이사 후보 (오혜연)
- 사외이사 후보 (이성엽)

5.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후보 (임태섭)

6.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이성엽)

7.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100억원 (총 이사의 수 8명)

8.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보통주 196,475주를 임직원 보상으로 처분하고,
잔여분은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소각 예정

제1호 의안. 제4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2025 회계연도)

당사의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의견은 모두 '적정'이었으며,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2025 회계연도 최종 재무제표는 3월 초중순 공시 예정

* DART 전자공시시스템 및 회사 홈페이지 등

■ 요약 연결 재무제표 (잠정/감사전)

(단위: 백만원)

	2025	2024	2023
영업수익	17,099,213	17,940,609	17,608,511
영업비용	16,025,998	16,117,200	15,855,307
영업이익	1,073,215	1,823,409	1,753,204
순이익	375,084	1,387,095	1,145,937
자산총계	30,107,783	30,515,255	30,119,227
부채총계	17,152,491	18,687,621	17,890,828
자본총계	12,955,292	11,827,634	12,228,399

[참고] 주주환원

	2025	2024	2023
현금배당	3,536억원 (1주당 1,660원)	7,536억원 (1주당 3,540원)	7,656억원 (1주당 3,540원)
자기주식 취득	-	-	3,000억원 (발행주식 총수의 2.8%)
자기주식 소각	-	-	2,000억원 (발행주식 총수의 1.8%)

[참고] 최근 3개 사업연도 감사의견

회계연도	감사의견
2024	적정
2023	적정
2022	적정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5년 두 차례 공포된 개정 상법을 준수하기 위해 당사는 관련 정관 규정들을 정비하고자 함 ('25.7.22. 및 '25.9.9.)

현행	변경 (안)	비고
<p>제21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1989. 8. 14 본 조 개정)</p>	<p>제21조(소집지) ①주주총회는 본사 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1989. 8. 14 본 조 개정) ② <u>회사는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를 개최한다.</u>(2026. 3. 26 본 항 신설)</p>	전자주주총회 병행 개최 의무화
<p>제27조(의결권의 행사) ① (생략) ②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주주총회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대리인은 그 법인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1994. 7. 7 본 항 개정)</p>	<p>제27조(의결권의 행사) ① (생략) ②대리인은 회사의 주주에 한하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주주총회 개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가 법인인 경우의 대리인은 그 법인의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한다.(1994. 7. 7, 2026. 3. 26 본 항 개정)</p>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총회 대리참석 반영
<p>제31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하로 하며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의 <u>사외이사</u>를 둔다. (2005. 3. 11 본 항 개정) ② (생략)</p>	<p>제31조(이사의 수) ①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2인 이하로 하며 전체 이사 수의 과반수의 <u>독립이사</u>를 둔다.(2005. 3. 11, 2026. 3. 26 본 항 개정) ② (생략)</p>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p>제32조 (이사의 선임) ① (생략) ②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한다. (2000. 3. 17 본 항 개정) ③~④ (생략) ⑤이사는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외이사로 한다.(1998. 3. 27 본 항 신설) ⑥ (생략)</p>	<p>제32조 (이사의 선임) ① (생략) ②(2026.3.26 삭제) ③~④ (생략) ⑤이사는 상임이사 및 비상임 이사와 상무에 종사하지 않는 독립이사로 한다. (1998. 3. 27 본 항 신설, 2026. 3. 26 본 항 개정) ⑥ (생략)</p>	이사 선임 시 의결 정족수 조항 삭제 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계속)

현행	변경 (안)	비고
<p>제32조의2(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① <u>사외이사</u>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를 둔다.</p> <p>② <u>사외이사</u>는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p> <p>③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u>사외이사</u>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u>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u>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2000.3.17 본 조 신설)</p>	<p>제32조의2(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p> <p>① <u>독립이사</u>를 추천하기 위하여 이사회 내에 <u>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u>를 둔다. (2026. 3. 26 본 항 개정)</p> <p>② <u>독립이사</u>는 <u>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u>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한다.(2026. 3. 26 본 항 개정)</p> <p>③ <u>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u>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u>독립이사</u>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2026. 3. 26 본 항 개정)</p> <p>④ <u>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회</u>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2026. 3. 26 본 항 개정) (2000.3.17 본 조 신설)</p>	<p>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p>
<p>제32조의3(이사의 자격)</p> <p>① 생략</p> <p>② 회사의 <u>사외이사</u>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상법, 기타 관련 법령 상 <u>사외이사</u>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u>사외이사</u>가 될 수 없다.(2012. 3. 23, 본 항 개정)</p> <p>③ 회사의 <u>사외이사</u>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이때 결원이 생긴 <u>사외이사</u>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2000. 3. 17 본 항 개정)</p>	<p>제32조의3(이사의 자격)</p> <p>① 생략</p> <p>② 회사의 <u>독립이사</u>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관련기술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상법, 기타 관련 법령 상 <u>독립이사</u>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회사의 <u>독립이사</u>가 될 수 없다.(2012. 3. 23, 2026. 3. 26 본 항 개정)</p> <p>③ 회사의 <u>독립이사</u>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이때 결원이 생긴 <u>독립이사</u>는 그 사유가 발생한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000. 3. 17, 2026. 3. 26 본 항 개정)</p>	<p>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p>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계속)

현행	변경 (안)	비고
<p>제33조 (이사의 임기) ① (생략) ② <u>사외이사의 총 임기는 6년 또는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u> (2021. 3. 25 본 항 신설)</p>	<p>제33조 (이사의 임기) ① (생략) ② <u>독립이사의 총 임기는 6년 또는 계열회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더하여 9년을 초과할 수 없다.</u>(2021. 3. 25 본 항 신설, 2026. 3. 26 본 항 개정)</p>	<p>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p>
<p>제35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u>회사의 이익을 위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u>(2000. 3. 17)</p>	<p>제35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u>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u>(2000. 3. 17, 2026. 3. 26 본 조 개정)</p>	<p>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명시</p>
<p>제45조의2(사외이사 과반수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항) 정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u>사외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1998. 3. 27 본 조 신설) 1.~2. (생략)</p>	<p>제45조의2(독립이사 과반수의 사전승인을 요하는 사항) 정관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u>독립이사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u>(1998. 3. 27 본 조 신설, 2026. 3. 26 본 조 개정) 1.~2. (생략)</p>	<p>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p>
<p>제47조의3(감사위원회) ① (생략) ② <u>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사외이사로 한다.</u> ③ (생략) ④ (신설)</p>	<p>제47조의3(감사위원회) ① (생략) ② <u>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독립이사로 한다.</u>(2026. 3. 26 본 항 개정) ③ (생략) ④ <u>감사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u>(2026. 3. 26 본 항 신설)</p>	<p>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p>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계속)

현행	변 경 (안)	비고
<p>제48조 (이사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한다.(2000. 3. 17 본 조 개정)</p>	<p>제48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본사에 비치한다.(2000. 3. 17 본 조 개정) ② 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본사에 비치한다.(2026. 3. 26 본 항 신설)</p>	<p>전자주주총회 기록 비치 의무</p>
<p>제49조의2 (사외이사의 처우) 사외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0. 3. 17 본 항 개정)</p>	<p>제49조의2 (독립이사의 처우) 독립이사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2000. 3. 17, 2026. 3. 26 본 항 개정)</p>	<p>사외이사 명칭의 독립이사 변경</p>
<p><신설></p>	<p>부 칙 <변경 제35호(2026. 3. 26)> 제1조(시행일)이 정관은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집지와 개최방식 및 의결권 대리행사에 관한 경과조치)제21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독립이사에 관한 경과조치)제31조,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제33조, 제45조의2, 제47조의3 제2항,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시행시점 규정</p>

제3호 의안. 자본준비금 감소의 건

주주환원 효과 제고를 위해, 배당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 감액배당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고자 함

■ 의결 내용

- 자본준비금(주식발행초과금) 중 1조 7천억원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전입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당사 사업의 내실을 강화하고 조직 문화를 혁신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책임자로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함



정재현 후보

- 생년월일: 1968. 6. 23.
- 주된 직업
 - SK텔레콤 사장

■ 세부경력

- SK텔레콤 사장 (2025~현재)
- SUPEX추구협의회 Governance위원장 (2024~현재)
- SK텔레콤 CGO (2024~2025)
- SK텔레콤 대외협력 담당 (2024)
-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겸 SK텔레콤 변화추진1담당 (2022~2023)
- SK스퀘어 법무담당, 투자지원센터장 (2021~2022)
- SK텔레콤 법무2그룹장 (2020~2021)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19)
-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장 (2017~2018)

■ 후보 추천 : 이사회

■ 후보 추천 사유

- 정재현 사내이사 후보자는 과거 SK스퀘어 CFO로서 전략, 재무, IR 등을 총괄하며 투자지원 체계 구축과 Portfolio 재편을 통한 기업가치 혁신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SUPEX추구협의회 Governance위원장으로 그룹 전반의 Governance 및 Risk Management 체계 관리를 총괄하고 Capital Market과의 소통을 실행하며 이사회/주주 중심 경영 체계를 선진화 함

제4-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계속)

■ 후보 추천 사유 (계속)

- 이러한 경험을 통해 SK텔레콤의 사장으로서는 기본과 원칙에 입각한 사업 구조 및 경영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MNO사업의 내실 강화와 AI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질적 성장, 그리고 전사 일하는 방식의 AI Transformation을 추진 중임
- 급변하는 Biz. 환경에서 MNO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 AI 사업 통한 신성장 확보와 역동적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최대주주와의 관계: 계열회사 임원 (SK텔레콤 미등기임원)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없음

■ 체납사실 여부: 없음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제4-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MNO 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제고하고, 마켓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 혁신 추진에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한명진 후보

- 생년월일: 1973. 10. 26.
- 주된 직업
 - SK텔레콤 MNO CIC 사장

■ 세부경력

- SK텔레콤 MNO CIC장 (2025~현재)
- SK스퀘어 대표이사 사장 (2024~2025)
- SK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2024)
- SK텔레콤 Corp. Strategy담당(CSO) (2021~2023)
- SK텔레콤 MNO사업지원그룹장 (2019~2020)
- SK텔레콤 Global사업개발본부장 (2016~2018)

■ 후보 추천 : 이사회

■ 후보 추천 사유

- 한명진 사내이사 후보자는 과거 MNO사업지원그룹장으로서 5G 전략 수립 및 실행 등을 주도하였으며, CSO로서 전사 전략을 총괄하며 사업개발 및 Global 투자를 실행하고, AI Transformation을 주도한 경험을 보유함. 또한 SK스퀘어 CEO로서 Operational Improvement 활동을 이끌며 스퀘어 본체 및 자회사의 실적 개선을 달성함
- 이러한 경험을 통해 현재 MNO CIC장으로서 B2C, B2B 사업 및 Network 전반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AI Transformation 과제를 도출하고, 관련 기능/역량 결집을 통해 혁신을 추진 중임

제4-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 (계속)

■ 후보 추천 사유 (계속)

- SK텔레콤이 고객 신뢰를 회복하며 마켓 리더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있어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사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 최대주주와의 관계: 계열회사 임원 (SK텔레콤 미등기임원)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없음

■ 체납사실 여부: 없음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제4-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통신과 AI사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략적 조언을 제공할 뿐 아니라 SK그룹과의 AI 사업 시너지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윤풍영 후보

- 생년월일: 1974. 11. 28.
- 주된 직업
 - SUPEX추구협의회 담당 사장

■ 세부경력

- SUPEX추구협의회 담당 사장 (2025~현재)
- SK AX 사장 (2023~2025)
- SK스퀘어 CIO (2021~2022)
- SK텔레콤 Corporate센터장 (2019~2021)
- SK텔레콤 PM그룹장 (2018)
- SK C&C 기획본부장 (2016~2017)

■ 후보 추천 : 이사회

■ 후보 추천 사유

- 윤풍영 후보자는 SK텔레콤 Corporate센터장(CFO), SK AX 사장 등을 역임하였으며, 통신, AI 등 SK텔레콤의 주요 사업과 기획/재무 등 다양한 영역에 전문성을 보유함. 당사가 통신 사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그룹과의 시너지 강화를 통한 AI 사업 성장의 기반을 마련함에 있어 후보자의 경험과 역량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제4-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계속)

- **최대주주와의 관계:** 최대주주 임원 (SK주식회사 미등기임원)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없음
- **체납사실 여부:** 없음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AI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現 SK텔레콤의 사외이사로서 이사회의 전문성 강화와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오혜연 후보

- 생년월일: 1974. 11. 13.
- 주된 직업
 - KAIST 전산학부 교수

■ 세부경력

- 카이스트 전산학부 교수 (2008~현재)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글로벌협력분과장 (2025~현재)
- 카이스트 MARS 인공지능통합연구센터 소장 (2018~2024)
-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원 부원장, 원장 (2021~2023)
-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민간위원 (2020~2022)
- 휴렛팩커드 연구원 (2001~2002)

■ 후보 추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후보 추천 사유

- KAIST 전산학부 교수로서 자연어 처리 등 AI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해 왔으며, 국내외 Big Tech 기업과의 AI 연구 프로젝트 수행 등을 통해, 학계·정부·기업 전반에 걸쳐 AI 분야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음
- 또한, 지난 3년간 당사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이사회의 다양성 제고와 전문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해 온 바, 재선임 시 이사회 운영의 전문성 강화 및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제4-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계속)

■ 직무 수행 계획

- SK텔레콤의 핵심 사업 영역인 AI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대한 주요 사안들을 심의 및 의결하면서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 또한, 3년간 SK텔레콤 사외이사로 재직하며 축적한 회사 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와 이사회 경험을 토대로, 주주와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주요경영 사안을 의결할 예정임
-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인지함

■ 최대주주와의 관계: 계열회사 임원 (SK텔레콤 사외이사)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없음

■ 체납사실 여부: 없음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정보보호 및 Compliance 영역에서의 전문성 및 경험을 기반으로,
회사의 정보보호 체계 고도화 및 고객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이성엽 후보

- 생년월일: 1967. 8. 3.
- 주된 직업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세부경력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19~현재)
-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 (2025~현재)
-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명예회장 (2025~현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 (2022~현재)
-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 (2004~2015)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서기관 (2001~2004)

■ 후보 추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후보 추천 사유

- 現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서,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정보통신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며, 정보보호 및 Tech Management 분야의 전문 역량을 보유 하고 있음
- 또한, 정보통신 관련 기관 및 핵심 정부 부처 등을 거치며, ICT 및 Compliance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한 바, 당사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고도화 및 고객 신뢰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제4-5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 (계속)

■ 직무 수행 계획

- 정보보호 및 Compliance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의 정보보호 거버넌스 고도화 및 고객 신뢰회복을 위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고,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Risk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여할 계획임
- 주주 및 사회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목표로 주요 경영 사안에 대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함
-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인지함

■ 최대주주와의 관계: 없음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없음

■ 체납사실 여부: 없음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재무·금융 및 Risk Management 분야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회사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는 한편,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경영 투명성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임태섭 후보

- 생년월일: 1963. 9. 17.
- 주된 직업
 - 성균관대학교 Graduate School of Business 교수

■ 세부경력

- 성균관대 GSB 교수 (2017~현재)
- 코발트스카이파트너스 파트너 (2016~2017)
- 한국 맥쿼리증권 대표 (2013~2015)
- 골드만삭스자산운용 한국법인 대표 (2010~2012)
- 홍콩 소페아 글로벌 리서치 파트너 (2008~2010)
- 골드만삭스증권 한국공동대표 (2001~2008)

■ 후보 추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후보 추천 사유 (사외이사 후보)

- 現 성균관대 GSB 교수이며, 글로벌 주식 리서치, 투자자문 및 자산운용 분야에서 30년 이상 경력을 보유하며, 재무/금융 및 Risk Management 분야의 전문성을 축적해 왔음
- 특히, 골드만삭스, 맥쿼리증권 CEO를 역임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경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당사의 기업가치 제고 및 이사회 다양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책임자로 판단되어 사외이사 후보자로 추천함

제5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계속)

■ 후보 추천 사유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

- 재무/금융 및 Risk Management 영역에서의 전문성과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이해도를 바탕으로 SK텔레콤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및 경영 투명성 확보를 통해 회사의 발전과 주주의 권익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 직무 수행 계획

- 재무·금융 및 Risk Management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SK텔레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 이사회 논의에 전문적이고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며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계획임
- 주주 및 사회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회사의 장기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주요 경영사안에 대해 독립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에 참여하고자 함
- 사외이사로서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기초로 직무를 수행하겠으며, 상법 제382조제3항, 제542조의8 및 동 시행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사외이사의 자격요건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할 수 있음을 인지함

■ 최대주주와의 관계: 없음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없음

■ 체납사실 여부: 없음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정보보호 및 Compliance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감사·내부통제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수행함으로써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후보자로 추천함



이성엽 후보

- 생년월일: 1967. 8. 3.
- 주된 직업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 세부경력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2019~현재)
- 한국정보통신법학회 회장 (2025~현재)
- 한국데이터인공지능법정책학회 명예회장 (2025~현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규제심사위원회 민간위원장 (2022~현재)
- 과기정통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장 (2017~2021)
-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 변호사 (2004~2015)
-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서기관 (2001~2004)

■ 후보 추천 :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후보 추천 사유

- 정보보호 및 Compliance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 그리고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 전반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감사·내부통제 영역에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수행함으로써, 이사회의 감독 기능 및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추천함

제6호 의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계속)

- 최대주주와의 관계: 없음
-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 내역: 없음
- 체납사실 여부: 없음
 -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없음
 -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없음

[참고] 이사선임의 건 관련

■ 제42기 주주총회 이사선임 후 이사회 구성

	성명	비고
사내이사	정재헌	'26.2월 현재 사장
	한명진	
기타비상무이사	윤풍영	
사외이사	이성엽	
	임태섭	
	오혜연	재선임
	노미경	
	김창보	

■ 제42기 주주총회 이사선임 후 이사회 Board Skills Matrix

- 사외 이사 과반으로 독립성 보유 (62.5%)
- 리더십 경험 뿐 아니라 ICT, AI, Global 투자/금융 역량 등 SK텔레콤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는데 필요한 역량을 충분히 보유

구분	총 8명 중
리더십	8명
재무/회계	5명
ICT	5명
AI	4명
Global 투자/금융	5명
Compliance	4명
ESG	3명
여성	2명
평균 연령	56.1세

제7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이사 보수 한도

- 2026년도 보수한도는 100억원으로 하고자 함

(단위: 억 원)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한도 금액	100	100	100	120	120	120
이사의 수	8명	8명	9명	8명	8명	8명

[참고] 2025년 이사 보수 지급 내역

이사의 수 (사외이사의 수)	한도 금액	실지급 금액	지급 비율
8명 (5명)	100억원	62.2억원	62.2%

실지급 금액 상세	
사내이사 (2명)	54.6억원
기타비상무이사 (1명)	-
사외이사 (5명)	7.6억원
합계	62.2억원

※ '25년 3월 퇴임한 사내이사 1인에 대한 지급 내역 일부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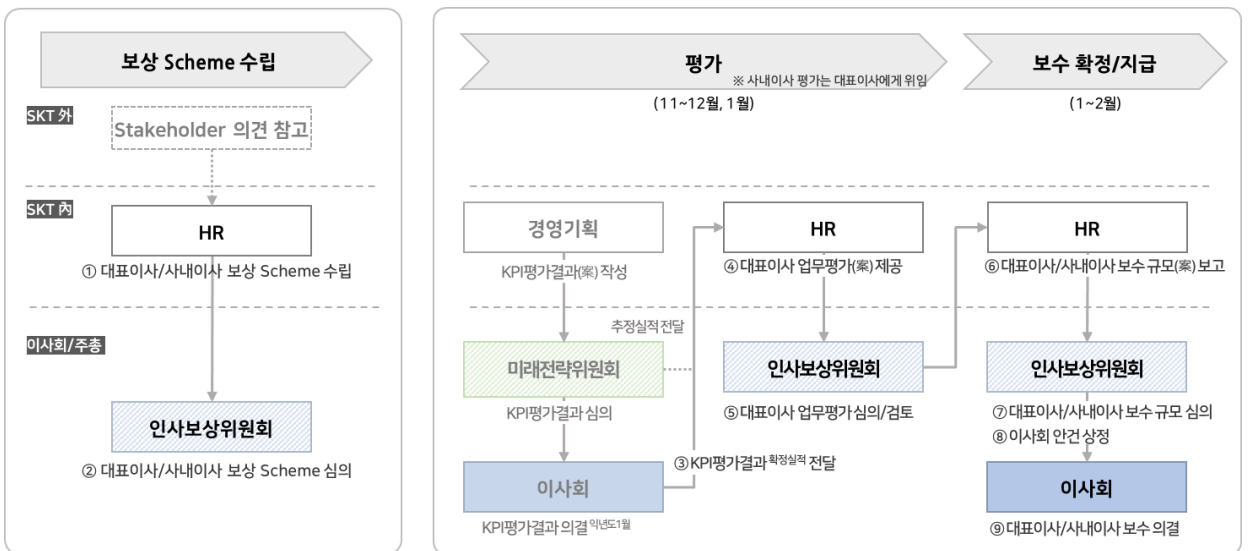
[참고] 이사 보수의 산정

- SK텔레콤 경영진의 보수는 경영실적과 수행 역할에 기반하여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한도 범위 내에서 산정하고 있으며 이사의 보수 및 퇴직금은 이사회 결의 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지급됨
- 이는 기업가치, 매출액/영업이익 등으로 구성된 계량지표와, 전략과제 수행 및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십 등으로 구성된 비계량 지표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책정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7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계속)

항목	내용
연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 역할과 성과, 기존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대표이사의 연봉은 회사 KPI 평가에 따라 연봉의 0~10% 수준에서 인상률을 1차 결정하고, 경영환경의 변화와 외부 보상 경쟁력, 그룹 내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조정
성과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가치, 재무성과(매출액, 영업이익, ROA/ROE, TSR, 주가수익률, 경쟁사 대비 주가성장률, 경제적 부가가치) 등 다양한 재무적 요소 및 ESG 전략과제, 경영성과 창출을 위한 리더십 등 정량/정성 목표 달성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 대표이사의 성과급은 회사 KPI 평가에 따른 Target Incentive (연봉의 0~50%)와 재무성과 및 기업가치 제고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Value Incentive(연봉의 0~110%)로 책정하며 이사회에서 최종 조정

※ 이사보수 결정 Process



제8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시행 예정임에 따라,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계획을 승인 받고자 함

※ 본 안건은 개정 상법이 주주총회일 ('26.3.26) 이전에 시행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 의결 내용

- 자기주식의 보유 또는 처분 목적: 임직원 보상 목적
- 보유 또는 처분대상이 되는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 '26. 3. 5. 현재 회사는 보통주 1,797,787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보통주 196,475주를 임직원 보상으로 보유/처분하고, 잔여분은 추후 이사회 의결을 통해 소각 예정임

항목	보유 대상	처분 대상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196,475주	보통주 196,475주
취득 방법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 실제 처분 자기주식 수량은 보상/행사 시점의 주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임직원 보상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유 개시시점 및 예정된 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다음 사항

구분	보유 개시시점	처분시점
자기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방법	1,797,787주	1,601,312주
	보통주 (신탁계약에 의한 취득)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종류와 수	212,992,266주	213,188,741주
	보통주	
발행주식총수 대비 자기주식 비율의 변화	0.84%	0.75%

※ 보유 개시시점은 정기주주총회 개최일인 '26.3.26.을 의미함
처분시점의 주식 수는 실제 처분 자기주식 수량에 따라 변동 가능

제8호 의안.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의 건

■ 의결 내용 (계속)

▪ 예정된 보유 기간

- 임직원 보상제도 운영에 따른 지급시점까지 보유 예정
(‘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관련 사항 승인 예정)

▪ 예정된 처분 시기

- 2026년 3월 26일 이후 지급 예정
(‘27년 정기주주총회에서 집행실적 보고 예정)

- ※ 본 안건은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의무화 한 개정 상법이 주주총회일(‘26.3.26.) 전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폐기됨
- ※ 개정 상법 시행 시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필수 기재사항이 변경되어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정정이 필요할 경우 본질적인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정할 수 있음